◉고용노동부령 제426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09월 26일

고용노동부장관 ㊞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6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(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7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(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8.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
   가.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

   나.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

   다.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   라.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

   마.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부　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